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20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6년 2월 9일
- 다.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5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환 재무국장)

가. 제안이유

- 모범납세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현행화하여 업무 및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의 체계를 '선발 → 지원 및 지원의 배제 → 심의' 순에서 '선정 → 심의 → 지원 및 지원의 배제'로 업무 순서에 맞게 재정리

-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전자납세자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 제3조).
 - 유공납세자 선정 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자를 추가하여 유공의 의미를 강화하고 자치구 추천 규정을 신설함.
 - 전자송달·전자납부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던 전자납세자 제도가 '23년 마일리지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실익이 없어 삭제함.

-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혜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가능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 제5조).
 -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모범납세자 지원 혜택 확대에 필요한 지원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함.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혜택을 추가한 경우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심의 위원회 의결 관련 규정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5.10.30. ~ 11.19.)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전부개정 취지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을 재구축하려는 것임.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모범납세자 선정·지원 및 자진 납부의식 고취 등 조례의 목적 명시
제2조(선정대상)	- 모범납세자(10년 무체납 등) 및 유공납세자(지역사회 기여 등)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	- 자치구청장이 세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4조(위원회 심의)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심의·의결 사항 규정
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 모범납세자(금융·의료·문화 등) 및 유공납세자(표창·주차요금 면제·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혜택 구체화
제6조(지원의 배제)	- 탈세 혐의자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절차 및 자치구의 자료 제출 의무 명시
제7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상세 사항의 규칙 위임
부칙	- 시행일(공포일) 및 기존 세무조사 면제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주요 개정 내용은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 대상을 규정하고(안 제2조), 자치구 추천을 신설하여(안 제3조)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전자납세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안 제2조 및 제5조)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며,
-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해소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의료비 할인 등 지원 가능한 혜택을 조례에 상세히 열거하고(안 제5조),

- 탈세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는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안 제6조) 등 조례 조문 체계를 '선정-심의-지원-배제'로 업무 순서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2007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조문 간 논리적 연결이 단절되고, 업무 순서가 실제 행정 절차와 괴리되어 있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의 '선발 → 지원 및 지원의 배제 → 심의' 순에서, '선정 → 심의 → 지원 및 지원의 배제' 순으로 조문 체계를 재편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조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법제처는 조문의 80% 이상이 변경되고 조문 체계가 재구조화될 경우,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¹⁾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전자납세자 지원제도(마일리지 적립)는 2023년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²⁾되었음에도, 본 조례에 동 규정이 잔존하고 있어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여 실무와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안의 가장 시급한 입법 필요성은 모범납세자 지원 정책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고 보임.

※ 최근 선거관리위원회(2025.2.13.)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1)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에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353-354면 참조).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3.1.1. 시행)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세액 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후략)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없이 모범납세자에게 지원 혜택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모범납세자에게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2025.2.13.)

나. 세부 내용 검토

1) 목적 및 선정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근간이 되는 목적 조항으로서 개정 사항은 없으나, 전부개정을 통해 하위 조문들이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정 절차와 지원 근거를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최근 5년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결과〉

(단위 : 명)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모범납세자	336,914	308,123	282,744	263,139	249,631
유공납세자	143	147	143	148	145

※ 출처: 서울시 재무국 제출자료

- 마일리지 제도 폐지로 실익이 없어진 ‘전자납세자’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정비이나, 2023년 초에 이미 실무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조차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제도 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유공납세자의 정의를 현행 ‘세입 기여’만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 기여’까지 확대하여 성실납세의 가치를 공동체 기여로 확장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현저한 공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예: 표창 수상 실적, 자원봉사 시간, 기부 실적 등)을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에 구체화하여 사전 공표되어야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p> <p>1.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p> <p>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을 것.</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하 현행과 같음)</p>

<p>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p> <p>2.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p> <p>3.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p>	<p>나.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p>
---	--

2)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안 제3조)

- 안 제3조는 유공납세자 선정에 자치구청장의 추천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치구 세무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현장의 공헌도나 세입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자치구별 추천 기준이 상이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 사유와 기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 신설></p>	<p>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세입 재정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p>

3) 위원회 심의(안 제4조)

- 현행 조례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과 ‘지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혜택 제공의 적시성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납세자를 선정하는 기구를 넘어, 지원 정책의 형평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여과 장치로,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서울시의 ‘선심성 행정’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를 없앤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지원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 혜택 도입·변경 시 위원회에 사전 보고와 더불어 주기적 감사, 부정 지원 환수 체계 및 추후 지원 결과 평가(예: 실적, 만족도 조사 등) 등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의) 위원회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p>제4조(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안 제5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 안 제5조제2항및제3항 각호에서 금융지원, 의료비 할인, 주차요금 할인, 세무조사 유예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정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 혜택의 구체적 내용을 조례가 아닌 서울시의 재량에 위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지원 정책이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비예산 협약 사업(커피전문점 등 외식업종 할인 우대 등)은 원안의 보충적 규정만으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³⁾ (서울시 재무국, 2025.11.10.)

“모범납세자 제도가 단순한 영예에 머물지 않고 세대 간 납세문화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령 편중·이용률 저조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대별 수요에 맞춘 실질적 혜택과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박영한 의원)

- 따라서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혜택’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신설(제8호)하고, 원안의 보충적 규정은 후순위로 배치(제9호)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붙임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및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3조(지원)</p> <p>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p> <p>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u>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u></p> <p>③ 전자납세자에게는 <u>서울 특별시세 등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u></p>	<p>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p> <p>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u>경우</u> 시장은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 제공</u> 2. <u>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u> 3. <u>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또는 건강검진비용 등의 할인</u> 4. <u>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정하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 할인</u> 5. <u>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분의 50 감면</u> 6. <u>시 주관 행사에 초청 대상으로 추천</u> 7. <u>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u> <p>8. <u>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삭제></p>	<p>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8. <u>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u></p> <p>9. (개정안 제8호와 같음)</p>

<p><u>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 전자 고지·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u></p> <p>④ <u>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3년간 세무 조사와 2년간 한 차례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3.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3년간 세무조사 유예 5.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p>③ (개정안과 같음)</p>
--	---	--------------------

5) 지원의 배제(안 제6조)

- 안 제6조제3항은 ‘구청장은 탈세 제보 및 확정 관련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될 수 있으므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청장에게 상위법상 근거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자료제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방식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치구의 자치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안 제6조제3항과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자치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시장이 필요 범위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구청장이 응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및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u>제4조(지원의 배제)</u>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3조제4항의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지원내용을 배제한다.</p> <p>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p> <p>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p> <p>〈제3항 신설〉</p> <p>〈제4항 신설〉</p>	<p><u>제6조(지원의 배제)</u></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보가 있는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제4호의 지원을 배제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배제한다.</p> <p>1. 신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세 등을 추징한 경우</p> <p>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 연루가 확인된 경우</p> <p>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확정 관련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해당 지원기관에 지원배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p>	<p><u>제6조(지원의 배제)</u></p> <p>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6) 시행규칙(안 제7조) 및 부칙

-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규정으로, 조례의 전부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규칙 또한 조문 체계와 내용을 동일하게 재편하려는 것임.
- 안 부칙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전부개정을 통해 강화된 모범납세자 등 지원 혜택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부칙 제2조는 기존 유공납세자의 세무조사 면제 기간을 기존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한 경과조치(과거 발생한 법률관계의 처리기준)를 통해 기존 수혜자들의 신뢰와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존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등이 개정 조례에 따른 신규 혜택을 누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 절차 등 행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를 받은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 협약을 통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추가하고, 서울시의 조례 제정 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구청장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민간 협약을 통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안 제6조제3항의 구청장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20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3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 협약을 통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추가하고, 서울시의 조례 제정 범위를 고려하여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구청장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민간 협약을 통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안 제6조제3항의 구청장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8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p> <p>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p>	<p>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 제공 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3.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또는 건강검진비용 등의 할인 4. 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정하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 할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분의 50 감면 6. 시 주관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7.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 	<p>1.~7. (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8. <u>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u></p>
<p>8. <u>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9. (개정안 제8호와 같음)</p>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지원의 배제)</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보가 있는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4호의 지원을 배제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배제한다.</p>	<p>제6조(지원의 배제)</p> <p>①~② (개정안과 같음)</p>
<p>1. 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세 등을 추징한 경우</p>	
<p>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 연루가 확인된 경우</p>	
<p>③ <u>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확정 관련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세입 재정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 제공
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또는 건강검진비용 등의 할인
 4. 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정하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 할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분의 50 감면
 6. 시 주관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7.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
 8. 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3.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3년간 세무조사 유예
5.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제6조(지원의 배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세제보 또는 탈세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보가 있는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4호의 지원을 배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배제한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세 등을 추징한 경우
 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 연루가 확인된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해당 지원기관에 지원배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받은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